

· 작성부서	파생상품시장본부 파생상품제도부 · 파생상품개발부		
· 담당자	주식파생제도팀 팀장 : 김배용 (☎ 051-662-2791) 팀원 : 서재욱 (☎ 051-662-2795) 금융파생개발팀 팀장 : 고영태 (☎ 051-662-2711) 팀원 : 윤창근 (☎ 051-662-2714)		
· 배포일	2014. 8. 28(목)	· 배포부서	홍보부 (☎ 02-3774-4082~4085)

※ 이 자료는 8월 28일(목) 14:00 이후 취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목 : 파생상품시장 안정성 제고 및 주식선물시장 제도개선

## 1. 파생상품시장 안정성 제고 등 제도 개선

### I 제도개선 개요

- 한국거래소(이사장 최경수, 이하 “거래소”)는 지난 6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파생상품시장발전방안」의 일환으로서 9/1일(월)부터,
- 파생상품시장의 결제안정성 제고를 위해
  - ① 장중 실시간으로 직전 체결가격대비 일정범위를 벗어나는 착오성 주문의 접수를 거부하는 실시간 가격제한제도를 도입하고,
  - ② 대규모 착오거래가 발생한 경우 착오상대방의 합의없이 거래소가 구제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하는 등 착오구제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계획
- 파생상품시장의 시장운영자율성 확대를 통한 전문투자자 위주의 위험관리시장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 ③ 코스피200선물·옵션시장에 최장 3년까지 거래가능한 장기 결제월물을 상장하고,
  - ④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당사자간 협의한 내용으로 거래를 체결시키는 협의대량거래가 가능한 상품에 코스피200선물, 코스피200옵션, 미니금선물 등을 추가할 예정

※ 특히, 결제안정성 관련 제도개선은 주문의 거부, 체결내역 정정으로 인한 손익 변경 등 투자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므로 투자자는 **거래 전에 반드시 투자유의사항 확인이 필요**

## II

## 주요 내용

### 가 실시간가격제한 제도 도입

- (주요 내용) 접속매매 시간 중, 거래소는 거래가 체결될 때마다 그 체결가격을 기준으로 실시간상·하한가(체결가격 $\pm$ a)를 설정하고,
  - ➔ 이후 접수되는 실시간상한가 초과의 매수호가와 실시간하한가 미만의 매도호가 접수를 거부
- (실시간상·하한가의 산출) 실시간상·하한가는 직전 체결가격에 가격변동폭을 가감하여 산출
  - (가격변동폭) 선물의 경우 직전 체결가격의 일정비율\*이며, 옵션은 전일의 기초자산의 증가나 변동성이 일정비율\*\* 변동하는 경우 이론가격의 변동폭임
    - \* 코스피200선물의 경우 1%, 주식선물은 3~5%, 미국달러선물은 1% 등
    - \*\* 코스피200옵션의 경우 기초자산가격 2%, 변동성이 30%
- (적용상품) 코스피200선물, 코스피200옵션, 주식선물(이마트선물은 제외), 3년국채선물, 10년국채선물, 미국달러선물, 유로선물, 엔선물 등 8개 상품에 적용
- (적용종목) 선물은 최근월과 차근월물, 최근월물과 차근월물간 스프레드종목에 적용하고, 옵션은 최근월물과 차근월물에 적용
- (시장가호가 및 최유리지정가호가 적용 방법 변경) 파생상품 시장의 시장가호가나 최유리지정가의 가격이 실시간가격제한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 ➔ 해당 호가는 실시간상한가 또는 실시간하한가의 지정가로 전환
- 주식선물 및 실시간가격제한제도를 적용하지 않는 상품은 지정가만 허용

## 나 착오거래구제제한제도 개선

- (주요 내용) 회원의 착오거래구제 신청이 있고,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에 한해 당사자간 합의가 없이 거래소가 체결가격을 정정함으로써 착오거래를 구제
  - 다만, 시장의 안정성을 담보하고 제도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엄격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구제가 가능
  
- (구제요건) 계좌별 상품별\* 손실액이 100억원 이상이 되는 등의 구제요건을 충족하고 시장의 안정적이고 원활한 결제를 위하여 구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해 구제
  - \* 코스피200선물, 코스피200옵션, 미국달러선물, 삼성전자선물 등 기초자산 및 거래유형(선물, 옵션)이 동일한 종목으로 구분되며, 선물스프레드종목은 기초자산이 동일한 선물에 포함
  
- (구제대상 및 방법) 착오거래구제제한범위\*를 초과하는 체결 건에 대하여 범위의 상단가격을 초과하는 체결가격은 상단가격으로, 범위의 하단가격 미만인 체결가격은 하단가격으로 정정
  - \* 주가지수선물(직전 약정가의 3%), 3년국채선물(0.5%), 10년국채선물(0.9%), 미국달러선물(1.5%), 주가지수옵션(직전 기초자산가격이 3% 변동하는 경우의 이론가격) 등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시행세칙 별표24참조

## 다 협의대량거래제도 개선 및 장기결제월물 상장

- (협의대량거래제도 상품확대) 협의대량거래가 가능한 상품을 현행 3년국채선물과 통화선물에서 코스피200선물, 코스피200 옵션, 주식선물, 미니금선물까지 확대
  - 다만, 주식선물은 '14년 11월 중 시행 예정

- (코스피200선물·옵션 장기결제월물 상장) 코스피200선물·옵션의 경우 최장 3년까지 장기결제월물을 상장하여 결제월 부족으로 장외에서 거래하는 수요를 장내화

《 코스피200 선물·옵션 추가상장 》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거래기간	결제월	개수	거래기간	결제월	개수
코스피200 선물	1년	분기월	4개	1년 2년 3년	분기월 반기월 12월	2개 2개 3개
코스피200 옵션	3개월 6개월	기타월 분기월	2개 2개	6개월 1년 2년 3년	기타월 분기월 반기월 12월	4개 2개 2개 3개

\* 분기월 : 3월물, 9월물, 반기월 : 6월

- (코스피200옵션 행사가격 설정 범위 확대) 코스피200옵션의 행사가격을 ATM을 기준으로 최대 상·하 30p 범위 내 설정
  - (행사가격 간격) 잔존거래기간 6개월 이내 결제월물은 2.5p 간격, 6개월 초과 1년이하 결제월물은 5p 간격, 1년 초과 결제월물은 10p 간격으로 설정

### Ⅲ 투자자 유의사항

- ① 착오거래 등으로 시황과 괴리된 실시간 가격제한 범위가 설정 되면 이로 인해 정상적인 거래가 제약을 받을 수 있음
  - (참고사례) 코스피200선물 최근월물의 정상적인 가격이 250.00p인 상황에서 가격을 0.05p씩 상승시키는 착오거래가 발생하여 가격이260p.00까지 상승했다면 실시간하한가가 257.40p로 설정되어 257.40p미만의 매도 주문의 접수가 거부됨 → 이 경우 거래소가 실시간 가격제한을 일시 해제

- ② 이미 접수된 주문이라고 하더라도, 실시간 가격제한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투자자에게 불리한 가격이라도 판단되어 취소될 수 있음
- ③ 착오거래구제 신청이 접수되는 경우 구제여부가 확정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착오자의 거래상대방은 체결가격과 구제될 가격 중 불리한 가격을 적용하여 증거금 및 결제금액이 산출
  - 만일 당일 중 착오거래 구제여부가 확정되지 않을 경우 이로 인해 위탁증거금의 추가예탁이 발생할 수 있음
- ④ 착오거래 상대방이 해당 착오거래에 대해 반대매매를 할 경우, 착오거래의 가격이 해당 반대매매 가격보다 불리한 가격으로 정정(구제)되어 오히려 손실을 입을 수 있음
  - 따라서 착오거래에 대한 반대매매 시, 예상 구제가격을 확인하고 거래하는 등 각별한 유의가 필요
- ⑤ 야간시간에 운영되는 글로벌시장에는 실시간가격제한, 착오거래구제, 협의대량거래, 장기결제월물 상장 등이 적용되지 않음

#### IV 기대효과

- (결제안정성 제고) 착오거래에 대한 사전적 예방 및 사후적 구제를 통해 착오주문으로 인한 대량의 손실로부터 투자자를 보호하고 시장의 결제안정성을 제고
  - 또한 장내에 종목이 없어서 장외에서 거래할 수 밖에 없었던 수요를 장내로 유도하여 거래 상대방 위험이 감소
- (주식시장 활성화) 주식을 장기 보유하려는 투자자가 장내 시장을 통해 효율적인 위험관리\*가 가능해짐에 따라 국내 주식 시장의 거래 유인이 증가

\* 그동안 장내시장에서 거래 시, 단기결제월물을 거래한 후 만기가 도래할 경우 다음 결제월물로 미결제를 이관함으로써 만기를 연장시키는 롤오버를 시행했으나 이 과정에서 거래비용이 과다 발생

- (전문투자자 위주의 파생상품시장 구축) 시장여건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됨으로써 국내·외 전문 투자자들의 국내시장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

V

**시행일 : 9/1일 (월)**

※ 상세사항은 별첨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 주식선물시장 제도 개선

- 한국거래소(이사장: 최경수)는 투자자의 위험관리 수요 충족과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 주식선물의 기초자산을 25종목에서 60종목으로 확대하고,
  - 장기 결제월을 도입하는 등 주식선물시장의 제도를 개선하여 9월 15일(월) 시행할 계획
  
- 금번 주식선물시장의 제도개선은 지난 6월 17일에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파생상품시장 발전방안」의 내용에 따라
  - 시장운영의 자율성이 확대된 것에 부응한 결과
  
- 또한 주식선물 시장 활성화를 위해 제도의 개선과 동시에 시장조성 제도를 대폭 개선하여 적극적인 유동성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

### I 주식선물시장 주요 제도개선 사항

- ① (기초자산수 확대) 우량주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주식선물을 추가로 상장하여 투자자의 정밀한 위험관리 및 투자전략의 활용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
  - 현재 25 종목인 주식선물 기초자산을 60 종목으로 확대
  - \* 주식선물 상장예정 명단 별첨 참조
  - (정기변경) 한국거래소는 매년 7월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기초자산을 추가 상장하고, 선정기준 미달 종목은 상장폐지

- 이는 시장의 수요를 적시에 충족시키고 주식선물 종목간에  
유동성 격차가 생기는 현상을 완화시키기 위함

\* (수시변경) 정기변경 이외에도 기초자산이 상장폐지되거나, 관리·정리매매 종목으로  
지정시 수시로 해당 주식선물을 상장폐지하고 다른 기초자산에 대한 주식선물을 상장

② (협의대량거래\*·결제월) 대량 보유분의 원활한 이월(roll-over)과  
파생결합증권(예: ELS) 발행자의 장기 헤지수요 등을 위하여  
협의대량거래를 도입하고, 거래기간이 최장 3년인 결제월을 추가

\* 협의대량거래: 당사자간 협의된 조건(종목·가격·수량)으로 거래소에 신청하여 체결

○ (신청수량) 100계약 이상, 기초자산별 미결제약정 제한수량 이내

○ (가격범위) 협의완료 시각 직전가격 대비  $\pm 5\%$  등

\* 협의대량거래는 시스템 개발을 감안, 주식선물은 주식옵션과 11월에 함께 도입  
(현재는 협의대량거래가 3년국채선물과 통화선물만 허용)

○ (변경후 결제월) 거래기간 1년의 분기월 2개, 2년의 반기월  
2개, 3년의 연월(12월) 3개 등 → 총 7개 결제월

\* (현행) 분기월 4개

③ (주식선물 호가가격단위) 주식선물시장의 유동성과 현·선  
연계거래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주식선물 호가가격단위를  
현행 대비 2배로 확대하여 주식시장과 일치\*

\* 단, 5천원 미만의 경우 주식시장과 상이(주식시장은 5원, 1원 등)

④ (증거금률) 종목별로 상이한 위험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주식선물 증거금률을 기초자산의 변동성 위험  
등에 따라 차등 적용하여 위험관리 제도의 합리성을 제고

\* (거래증거금률) 현행 모든 기초자산 12% 동일 → 기초자산별로 7%~12.5% 차등



## II

### 주식선물 新 시장조성자 제도 도입

- (호가의무 강화) 시장조성자의 주식선물에 대한 의무스프레드를 과거보다 좁은 수준으로 설정하여 실질적인 시장유동성 공급이 가능
- (지속적 시장조성) 주식선물 종목별로 자생적 수급기반이 확보될 때까지 시장조성을 유지
- (인센티브 강화) 시장조성자의 주식선물 거래 비중에 비례한 주식선물 수수료 관련 인센티브 제공

#### 【주식선물시장 시장조성자 선정(9/15일 시행)】

\* 대우증권, 신영증권, 신한금융투자, 우리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현대증권  
(이상 6개사, 가나다 순)

## III

### 기대 효과

- 투자자의 위험관리 정밀성 제고 및 주식시장 활성화
  - 우량주에 대한 주식선물 도입 확대로 정밀한 위험관리 및 투자수단을 제공하여, 기존 및 신규 투자자의 주식시장 참여를 촉진
  - 차익거래를 통한 주식시장의 균형가격 형성 및 시황 악화시 추가하락 완화 효과로 주식시장 활성화에 기여
  - 수준 높은 투자 및 위험관리 전략을 구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업계의 역량 제고 기회 마련
- 다양한 상품개발 지원·공급 및 금융시장의 고도화 기여
  - 위험관리 수단이 발행과 운용에 필수적인 ELS 등 다양한 파생 결합증권의 개발을 지원 및 그 상품을 투자자에게 제공

- 특히 장기월물 및 협의대량거래의 도입을 통한 장외거래 수요의 장내화로 거래비용 절감 및 거래상대방 위험 축소

□ 파생상품 수요의 해외유출 방지

- 다양한 상품을 제공해, 점차 증가하고 있는 국내 투자자의 해외 파생상품 거래로 인한 국부유출을 완화

\* 국내투자자의 해외 주가지수상품 거래대금 :  
 약 2배 증가[’12년 1,072억불 → ’13년(8월까지) 1,954억불]

\*\* 국내 투자자의 해외 장내 파생상품 전체 거래대금 :  
 약 4%증가[’12년 11,896억불 → ’13년(8월까지) 12,334억불]

**IV 경과 및 향후 일정**

□ 경과

- 주식선물관련 회원사 임직원 의견수렴(3/24~)
  - 파생상품 딜러, 국내외 영업, 애널리스트, IT 개발 부문 등
- 주식선물·옵션시장 리모델링 설명회(7/14~15)
- 금융위원회의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일부개정 승인(8/27)

□ 향후 일정 (\* 일정은 일부 변경 가능)

- 출입기자 대상 주식선물 등 파생상품 설명회(9/1~4, 서울)
- 기관투자자 대상 주식선물시장 투자설명회(9/3, 서울)
- 주식선물시장 리모델링 시행(9/15)
  - 협의대량거래제도 도입은 별도로 시행(11월)
- FIA 시카고 엑스포 참가 주식선물 등 홍보(11/5~6)
  - \* 한국거래소 파생상품시장 홍보세션(InfoXchange) 개최 예정

※ 상세사항은 별첨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거래소 보도자료는 인터넷(<http://www.krx.co.kr>)에 수록되어 있습니다.